



의안번호	제 2007 - 15 호
의 결 연 월 일	2007. 12. 10. (제 5 차 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차 례>

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추진 경과	1
II. 양형자료분석관의 양형자료조사	22
III. 전문위원 연구업무 지원	24
IV.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준비 상황 보고	25
※ 설문조사 문항(안)	49
※ 추가 양형조사표	75

I.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추진 경과

1. 조사계획의 개요

가. 양형자료조사 대상

- 2004. 3. 1. ~ 2007. 2. 28. 3년 동안 전국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약 7만 명의 피고인(1심 판결에 대한 상소심 사건 포함)
- 법원별, 사건유형별 조사대상사건
 - 지방법원 본원 및 법관 수 6인 이상 23개 지원 69,641명
 - 법관 5인 이하 14개 지원 3,254명

나. 조사기간

- 1단계
 - 피고인 약 3만 명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2007. 11. 19.부터 2008년 1월 말경까지
- 2단계
 - 피고인 약 4만 명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 2007년 2월 초순경부터 2008년 4월 초순경까지로 예상

다. 조사장소

- 확정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지방검찰청 본청 및 지청에서 조사
 - 확정기록의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있는 등 대검찰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사장소를 기록보관청으로 제한하기로 협의됨
-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와 지방검찰청 본청에 대해서는 협의 종료

- 지방검찰청 지청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할 예정

2. 표본 추출 결과

가. 표본추출 방법

(1) 기본적인 표본추출 방법

○ 먼저, 표본의 수를 추출하였음

- 연도별, 법원별, 사건유형별(고합, 고단, 고정), 죄명별 분류과정을 통하여 분류된 내용들을 각각의 층으로 구분
- 층화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법원별·사건유형별·죄명별로 구분된 모집단을 하나의 세부 모집단으로 구성
- 각각의 세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층화적인 방법과 함께 세부 모집단의 규모에 맞게 비례적인 표본의 수를 추출하는 비례배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 표본의 수에 따라 구체적인 피고인을 추출함

- 추출된 표본의 수는 표본을 일렬로 나열하여서 일정한 구간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인 계통적인 추출방법과 세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의 수만큼을 뽑아내는 무작위 추출방법을 혼용하여 구체적인 표본을 추출

(2) 고정사건 수의 고려

- 고합, 고단, 고정사건 전체 피고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출하는 경우의 표본 수(양형위원회 제4차 설명자료 23쪽 참조)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전체	46,885	375,445	221,268	643,598
표본 수	5,710	42,044	22,246	70,000

○ 양형위원회 제4차 회의 의결 취지에 따라 고정사건의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 고정사건의 전체 피고인 수를 기준으로 일정 수에 달하지 않는 죄명(중요한 죄명 제외)의 피고인을 제외하는 경우

▶ 이 방안에 의하면 일정 빈도수 이하의 죄명을 제외할 수 있을 뿐 고정사건의 전체 표본 수를 감소할 수는 없게 됨

- 고정사건의 표본 수 전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정 비율에 따라 표본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

▶ 고정사건의 죄명별 표본 수 50건을 기준으로 하여 50건(즉, 전체 피고인 수 약 500건)을 유의미한 최소 표본 수인 30건으로 감축하고, 표본 수 50건 이상인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표본 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고정사건 표본 수를 감축

▶ 고정사건 표본 수가 50건 미만이라도 중요한 죄명(양형위원회 제4차 회의 설명자료 177쪽 이하 참조)은 최소 표본 수인 30건(전체 피고인 수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피고인을 전수조사)을 조사하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죄명(위 설명자료 212쪽 이하 참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고정사건의 표본 감소 수만큼 고합, 고단사건의 표본 수를 비율적으로 증가시킴

○ 고정사건 감소 결과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전체	46,885	375,445	221,268	643,598
수정 전 표본 수	5,710	42,044	22,246	70,000
수정 후 표본 수	6,697	54,484	11,774	72,895
차이	987	12,440	△10,472	2,895

3. 표본추출 결과

가. 법원별 표본 사건 수

법원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서울중앙	823	4,081	812	5,716
서울동부	185	1,794	438	2,417
서울남부	230	2,081	481	2,792
서울북부	219	1,732	457	2,408
서울서부	174	1,401	299	1,874
의정부	192	1,645	401	2,238
고양	76	1,073	209	1,358
인천	375	3,183	638	4,196
부천	122	852	238	1,212
수원	334	2,663	562	3,559
성남	129	1,371	245	1,745
안산	132	1,358	336	1,826
평택	74	713	122	909
여주	35	453	55	543
춘천	55	547	110	712
강릉	60	536	82	678
원주	44	559	110	713

법원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영월	30	280	18	268
속초	30	220	18	268
대전	245	1,688	314	2,247
천안	79	996	180	1,255
홍성	35	494	88	617
서산	44	501	59	604
공주	18	252	28	298
논산	30	307	37	374
청주	172	1,192	247	1,611
충주	33	416	54	503
영동	14	129	17	160
제천	17	181	22	220
대구	454	3,811	951	5,216
포항	103	655	97	855
안동	60	513	44	617
경주	31	428	60	519
김천	61	681	88	830
영덕	18	197	19	234
상주	30	239	29	298
의성	25	119	25	169
거창	19	123	27	169
밀양	16	171	32	219
부산	443	3,150	1,178	4,771
부산동부	89	844	359	1,292
울산	179	1,541	326	2,046
창원	188	1,630	390	2,208
진주	73	710	152	935
통영	61	533	125	719

법원	고합	고단	고정	합계
광주	234	1,689	299	2,222
순천	126	892	204	1,222
목포	66	581	123	770
해남	26	179	20	225
장흥	13	110	14	137
전주	124	979	225	1,328
군산	88	677	131	896
정읍	27	309	49	385
남원	20	177	18	215
제주	117	848	112	1,077
합계	6,697	54,484	11,774	72,895

나. 죄명별 피고인 수¹⁾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가스방출	32	0	0	32
간통	0	529	0	529
감금치상	47	0	0	47
강간	66	0	0	66
강간미수	44	0	0	44
강간상해	75	0	0	75
강간치상	139	0	0	139
강도	51	0	0	51
강도강간	33	0	0	33
강도미수	33	0	0	33
강도살인	40	0	0	40
강도상해	263	0	0	263
강도예비	0	47	0	47

1) 대표죄명임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강도치상	40	0	0	40
강제집행면탈	0	74	0	74
강제추행	35	124	0	159
강제추행상해	38	0	0	38
강제추행치상	60	0	0	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0	154	96	25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32	52	0	84
건축법위반	0	76	109	185
경범죄처벌법위반	0	42	0	42
골재채취법위반	0	44	0	44
공갈	0	154	0	154
공갈미수	0	67	0	67
공기호부정사용	0	60	0	60
공무상표시무효	0	53	0	53
공무집행방해	0	304	109	413
공문서변조	0	84	0	84
공문서부정행사	0	85	0	85
공문서위조	32	628	0	660
공용물건손상	0	116	36	1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0	506	40	54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0	303	0	30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65	0	0	265
공직선거법위반	291	0	0	291
관광진흥법위반	0	70	0	70
관세법위반	35	165	54	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0	3,355	873	4,22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37	0	0	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0	87	68	155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권리행사방해	0	50	0	50
근로기준법위반	41	558	361	96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74	46	12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0	83	0	83
농지법위반	0	102	41	143
뇌물공여	55	64	0	119
뇌물수수	39	75	0	1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0	55	46	10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0	72	0	72
대외무역법위반	0	44	0	44
도로교통법위반	0	269	185	4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2	890	434	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3	2,930	1,711	4,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0	424	118	542
도로법위반	0	96	346	442
도박	0	67	83	150
도박개장	0	679	0	679
도박개장방조	0	46	0	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43	264	0	3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38	51	0	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69	1,237	0	1,306
명예훼손	0	106	145	251
모욕	0	0	44	44
무고	33	528	74	635
밀항단속법위반	0	46	0	4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0	73	0	73
배임	0	207	0	207
배임수재	47	86	0	133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배임증재	36	50	0	8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위반	0	84	0	84
범인도피	0	73	0	73
범인도피교사	0	48	0	48
변호사법위반	60	204	0	264
병역법위반	0	965	54	1,01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0	272	0	2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	32	0	0	3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0	75	0	7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0	82	0	8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0	73	45	11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0	62	0	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36	777	112	925
사기	141	8,850	905	9,896
사기미수	0	156	0	156
사문서위조	38	359	79	476
사서명위조	0	55	0	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0	155	0	155
산림법위반	32	76	0	1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0	73	47	120
산지관리법위반	0	82	33	115
살인	102	0	0	102
살인미수	104	0	0	104
상법위반	0	57	0	57
상습도박	32	275	0	307
상습사기	0	293	0	293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상표법위반	0	282	77	359
상해	37	824	783	1,644
상해치사	64	0	0	6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0	122	111	233
석유사업법위반	0	199	152	3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0	182	37	2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13	0	0	1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상해)	68	0	0	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치상)	70	0	0	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0	55	0	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43	0	0	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강간등)	33	0	0	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강간등)	84	0	0	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57	0	0	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0	53	0	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등)	107	0	0	1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82	0	0	82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제추행등)	37	0	0	37
소방법위반	0	0	35	35
수산업법위반	0	75	54	129
수질환경보전법위반	0	80	0	80
식품위생법위반	0	122	244	36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0	44	0	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0	186	0	1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0	67	0	67
야간방실침입절도	0	67	0	67
야간주거침입절도	0	224	0	2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0	91	0	91
약사법위반	0	79	36	115
업무방해	40	273	252	565
업무상과실치사	0	115	0	115
업무상과실치상	0	85	0	85
업무상배임	35	153	0	188
업무상횡령	43	808	74	9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0	0	32	32
여권법위반	0	51	0	5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32	304	39	375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0	61	0	6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0	50	0	50
외국환거래법위반	0	80	37	117
위계공무집행방해	32	68	0	100
위조공문서행사	0	63	0	63
위조사문서행사	0	50	0	50
위조유가증권행사	0	77	0	77
위증	0	266	46	312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위증교사	0	86	0	86
유가증권변조	0	44	0	44
유가증권위조	0	175	0	17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31	100	0	1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44	196	0	24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0	137	0	13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0	286	306	59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0	128	0	128
의료법위반	0	82	45	127
일반건조물방화	39	0	0	39
일반교통방해	35	74	38	147
일반물건방화	35	0	0	35
일반자동차방화	36	0	0	36
입찰방해	0	44	0	4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0	45	0	45
자동차관리법위반	0	149	140	289
장물알선	0	58	0	58
장물취득	32	134	0	166
재물손괴	0	83	105	188
저작권법위반	0	55	35	9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0	44	0	44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40	0	0	40
절도	41	1,975	128	2,144
절도미수	0	140	0	140
점유이탈물횡령	0	55	0	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0	45	0	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0	64	32	96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등)	0	74	40	1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0	60	0	60
정치자금법위반	31	0	0	3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35	0	0	35
조세범처벌법위반	39	582	41	662
존속살해	33	0	0	33
존속상해	0	87	0	87
주거침입	0	57	0	57
주차장법위반	0	0	33	33
준강간	38	0	0	38
준강도	47	0	0	47
준강제추행	31	74	0	105
중상해	37	0	0	37
증권거래법위반	47	63	0	110
지방공무원법위반	0	60	0	6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40	0	0	40
직업안정법위반	0	109	31	1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0	45	0	45
청소년보호법위반	35	132	133	30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31	46	0	7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39	0	0	3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35	194	0	22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32	0	0	3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92	0	0	9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0	50	0	50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0	50	0	50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출입국관리법위반	0	85	0	85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0	46	0	46
컴퓨터등사용사기	0	96	0	9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0	48	171	2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0	53	0	53
특수강도	138	0	0	138
특수강도미수	45	0	0	45
특수공무집행방해	31	77	0	1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91	0	0	91
특수절도	53	1,410	0	1,463
특수절도미수	0	141	0	141
특수협박	0	75	0	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76	0	0	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70	4	0	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41	0	0	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40	65	0	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36	0	0	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85	0	0	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35	0	0	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31	0	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재범)	1	0	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43	0	0	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62	0	0	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39	3,010	128	3,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40	0	0	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39	0	0	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33	0	0	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36	0	0	36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88	1,181	0	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46	0	0	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31	0	0	31
폐기물관리법위반	0	88	47	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0	265	175	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0	94	0	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31	171	65	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69	0	0	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0	55	0	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0	60	0	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33	90	0	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	0	54	0	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43	476	0	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	0	72	0	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61	2,473	1,332	3,8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0	129	140	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0	65	40	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31	132	202	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0	79	0	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흥기등상해)	52	991	0	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흥기등손괴)	0	50	0	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흥기등폭행)	0	72	0	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흥기등협박)	0	90	0	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	48	673	0	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손괴)	0	51	0	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폭행)	0	72	0	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협박)	0	107	0	107
폭행	0	74	122	196

대표죄명	고합	고단	고정	합계
폭행치사	52	0	0	52
폭행치상	0	46	0	46
한국마사회법위반	0	67	0	6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0	93	62	155
허위공문서작성	0	51	0	51
현존건조물방화	37	0	0	3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35	0	0	35
현존건조물방화예비	0	46	0	46
현주건조물방화	70	0	0	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58	0	0	5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0	55	0	55
현주건조물방화치상	33	0	0	33
협박	0	45	0	45
횡령	32	351	86	469
합계	6,698	54,217	11,980	72,895

4. 조사팀의 구성

지역	팀	분석관(팀장)	조사요원	분석관/ 지원단	합계
서울지역	A	최병일 등	8명	3명/1명	12명
	B	차주민 등	7명	3명/1명	11명
대전지역	C	박영국	10명		11명
대구지역	D	정호길	12명		13명
부산지역	E	박장배	9명		10명
광주지역	F	정진안	12명		13명
합계		4명	58명	6명/2명	70명

※ 조사장소가 검찰청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록 색출 및 대출 편의 등을 위해 각 검찰청 직원 2명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5. 양형조사표

가. 양형조사표의 구성

- 총 126개의 단일범 또는 대표죄명에 대한 양형조사표
 - 38개의 주요범죄, 40개의 추가범죄 등 78개 범죄에 대한 개별양형조사표는 11. 16. 제1차 임시회의에서 보고
 - 양형자료조사 개시 이후 48개 범죄에 대한 개별양형조사표를 추가함
- ※ 양형자료조사를 하면서 시급하게 양형조사표를 작성할 필요가 제기되어 운영지원단에서 추가 작성함

나. 양형조사표의 내용

- 별지 기재와 같음

6. 조사 일정

- 서울지역 2개팀
 - 2007. 11. 19.부터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 개시
- 대전지역 1개팀
 - 2007. 11. 20.부터 대전지검에서 조사 개시
- 부산지역 1개팀
 - 2007. 11. 20.부터 부산지검에서 조사 개시
- 광주지역 1개팀
 - 2007. 11. 20.부터 광주지검에서 조사 개시

※ 대구지역은 대구지검의 사정으로 2008. 2. 1. 이후 조사 개시

7. 조사자 교육 및 조사 절차

가. 교육

○ 재경지역

- 2007. 11. 16. (금) 10:00 ~ 17:00 대법원 3층 정보화교육장

○ 대전 이남 지역

- 2007. 11. 19. (월) 13:00 ~ 18:00 대전고등법원 10층 중회의실

나. 조사절차

○ 각 검찰청에 조사개시 예정일 및 조사대상사건의 죄명, 피고인명, 사건번호(검찰사건번호) 목록을 전달

○ 각 검찰청 기록보존계 담당자가 기록을 찾아 대출

○ 조사팀원은 판결문(이미 출력하여 정리)과 기록을 검토하여 양형조사표를 수기로 작성

- 원래 엑셀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조사와 동시에 입력하는 것을 예정하였으나, 조사의 신속성,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종이양식에 기재한 후 일괄 전산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작성된 양형조사표는 조사팀장이 수집하여 확인 후 운영지원단에 송부

○ 운영지원단은 수기로 작성된 양형조사표의 내용을 전산입력

8. 양형자료조사 현황

조사팀	조사요원 수	표본 수	11. 19. ~ 11. 29.	1일 평균
서울동부	9	2,348	691(29.4%)	76.7
서울남부	8	2,680	407(15.2%)	45.2
대전	11	2,165	521(24.1%)	65.1
부산	10	4,547	521(11.5%)	65.1
광주	13	2,158	611(28.3%)	76.3
합계	51	13,898	2,751(19.8%)	328.4

가. 조사시간

- 조사 착수 초기에는 조사에 숙달되지 않았고, 기록색출 및 사무실 정비 등 업무에 주력한 점을 감안
- 11. 26. 이후 1일 평균 약 100건 정도 조사하고 있어, 향후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감축될 것으로 예상

나. 조사의 정확성

- 각 팀 자체적으로 조사요원이 작성한 양형조사표를 팀장이 1차로 점검
- 운영지원단에 송부된 양형조사표를 지원단 자료조사과에서 2차로 점검
- 점검된 사항을 5개팀에 전달하여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9. 향후 계획

가. 조사팀의 재구성

- 2008. 1. 2. 조사팀을 재구성할 예정임
 - 현재의 조사자 중에는 2008. 1. 11. 임용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음
 - 2007. 12. 10. 현재 교육 중에 있는 법원서기보 임용 예정자들을 조사자로 추가 선정하여 조사팀을 확대 개편할 예정임
- 서울 지역
 - 3개 팀을 구성
 - 팀당 조사자 약 10~15명
- 대전, 부산, 광주 지역
 - 각 1개 팀을 구성
 - 팀당 조사자 약 10명
- 대구 지역
 - 조사 개시시기가 지연된 점 감안
 - 2개 팀을 구성
 - 팀장 조사자 약 10명

나. 법원별 조사 순서

지역	조사개시 예정일(안)
서울중앙	2007. 12. 18.~
서울동부	2007. 11. 19.~
서울남부	2007. 11. 19.~
서울북부	2007. 12. 24.~

지역	조사개시 예정일(안)
서울서부	2008. 1. 2.~
의정부	2008. 1. 18.~
고양	2008. 2. 25.~
인천	2008. 1. 18.~
부천	2008. 3. 6.~
수원	2008. 2. 21.~
성남	2008. 2. 28.~
여주	2008. 3. 26.~
평택	2008. 3. 18.~
안산	2008. 3. 14.~
춘천	2008. 2. 12.~
강릉	2008. 2. 19.~
원주	2008. 3. 25.~
대전	2007. 11. 20.~
홍성	2008. 1. 24.~
서산	2008. 1. 31.~
천안	2007. 12. 19.~
청주	2008. 1. 2.~
충주	2008. 2. 12.~
대구	2008. 2. 1.~
안동	2008. 3. 11.~
경주	2008. 3. 19.~

지역	조사개시 예정일(안)
포항	2008. 3. 11.~
김천	2008. 3. 24.~
부산	2007. 11. 20.~
부산동부	2008. 2. 25.~
울산	2008. 2. 1.~
창원	2008. 1. 14.~
진주	2008. 3. 6.~
통영	2008. 3. 19.~
광주	2007. 11. 20.~
목포	2007. 12. 19.~
순천	2008. 2. 15.~
전주	2008. 1. 2.~
군산	2008. 3. 4.~
정읍	2008. 3. 17.~
제주	2008. 1. 19.~

※ 법관 수 5인 이하 소규모 지원은 추가 계획 수립

※ 위 계획은 조사 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양형자료분석관의 양형자료조사

1. 개요

○ 각급 법원의 양형자료분석관은 2007. 8. 1.부터 1심 선고사건의 양

형자료조사 업무에 착수하여 2007. 12. 1. 현재 형사합의사건 총 567건, 형사단독사건 총 1,774건의 양형자료를 조사하였음

- 운영지원단은 각급 법원의 분석관이 송부한 양형조사표를 판결문과 대조하여 누락된 양형인자를 보충하는 등 오류를 시정하도록 조치 하였음

2. 양형자료조사 내역

가. 조사 현황

		살인	성폭력	뇌물	마약	교특법위반	특가(도주)	계
합의	8월	27	87	5	12	0	0	131
	9월	27	95	14	20	2	3	161
	10월	21	81	5	11	0	0	118
	11월	40	94	13	10	0	0	157
	소계	115	357	37	53	2	3	567
단독	8월	0	8	2	84	124	114	332
	9월	0	3	0	118	167	157	445
	10월	0	9	1	112	198	157	477
	11월	0	5	0	126	205	184	520
	소계	0	25	3	440	694	612	1,774
누계		115	382	40	495	694	615	2,341
비율(%)		4.9	16.3	1.7	21.2	29.6	26.3	100

나. 조사건수

- 2개월 동안 분석관 1인 당 평균 234.1건(형사단독사건 기준 347.5

건) 조사

- 형사단독사건 기준 1일 당 4.3건
- 8월에는 분석관 1인 당 평균 46.5건(형사단독사건 기준 72.7건, 형사합의사건은 형사단독사건의 3배 가중치 부여) 조사
 - 형사단독사건 기준 1일 당 3.6건
 - 업무개시 초기이고 하계휴가로 인하여 실질적인 근무일수 및 선고사건 수가 적었던 점 감안
- 9월에는 분석관 1인 당 평균 60.6.건(형사단독사건 기준 92.8건) 조사
 - 형사단독사건 기준 1일 당 4.6건
- 10월에는 분석관 1인 당 평균 59.5건(형사단독사건 기준 83.1건) 조사
 - 형사단독사건 기준 1일 당 4.2건
- 11월에는 분석관 1인 당 평균 67.7건(형사단독사건 기준 99.1건) 조사
 - 형사단독사건 기준 1일 당 5.0건
- 4개월 동안 양형자료조사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

3. 향후 계획

- 2007. 11. 23. 기준 양형자료조사 결과를 기초로 조사대상 6개 범죄 유형에 관한 양형통계를 분석하고 있음
- 과거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조사표에 따라 분석관 입력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분석관 조사대상 죄명 등을 정리할 예정

III. 전문위원 연구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 회의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회의개최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4차 (워크숍)	2007. 11. 2. 16:00 ~ 11. 3. 12:00	○ 양형인자 정리 ○ 외국 양형제도
	제5차	2007. 11. 30.	○ 외국 양형제도 ○ 형벌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
1팀 회의	3차	2007. 10. 29. 17:00	○ 양형인자 정리 ○ 범죄유형의 설정
	4차	2007. 11. 26. 14:00	○ 외국 양형제도 (호주, 독일, 일본) ○ 설문문항 초안
2팀 회의	3차	2007. 10. 26. 14:30	○ 외국 양형제도(미국)
	4차	2007. 11. 23. 14:00	○ 외국 양형제도(미국)
특별연구팀	2차	2007. 10. 29. 14:30	○ 형벌의 본질과 목적 ○ 연구과제 소목차 정리 및 연구자 결정
	3차	2007. 11. 28. 10:30	○ 형벌의 목적과 양형기준의 목적

IV.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준비 상황 보고

1. 설문조사 실시계획안

가. 설문조사의 목적

(1) 기본방향

-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일반인과 형사사법기관 실무자, 형사법 교수 등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다만, 양형제도 내지 양형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이 추가될 수 있음

(2) 구체적인 조사목적

- 형벌에 관한 일반인의 지식 정도를 파악
-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인이 느끼는 범죄로부터 위협 정도를 파악
- 범죄의 중대성 및 적정한 양형에 관한 의견을 파악
- 형벌의 목적에 대한 의견을 파악
-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및 형벌의 효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
- 형벌을 정할 때 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에 관한 의견을 파악
-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죄유형에 관한 의견을 파악
- 일반인의 인식과 형사사법 실무자의 인식을 비교
- 형사사법 실무자들에 대한 양형정책에 관한 의견조사
 - 현재의 양형실무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의견
 -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내용에 관한 의견

나. 설문조사의 대상

(1) 일반인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000명 ~ 1,500명을 대상으로 함

(2) 형사사법기관 실무가 및 형사법 교수 등

- 법관, 검사, 변호사(국선변호인 일정 수 이상 포함), 경찰, 형사법 교수, 법무사, 교도관, 언론인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함

다. 설문문의 주요 내용

(1) 일반인이 인식하는 범죄 위협 정도

- 우리나라에서 범죄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 범죄의 위협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지

(2) 범죄의 중대성 및 적정한 양형

-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인 모의사례를 제시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
- 구체적인 모의사례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벌을 파악
- 제시된 범죄유형에 대한 실무에서의 평균 양형을 제시한 후 그 적정성을 파악

(3)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의견

- 응보, 예방(특별예방, 일반예방), 재사회화, 피해자보호, 공공의 안전

등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

(4) 범죄자에 대한 태도와 형벌의 효과

-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원인
- 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징역형(실형)이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지 여부
- 효과적인 제재방법에 대한 인식 등

(5) 양형요소에 대한 인식

- 형량을 정할 때 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6) 양형위원회의 업무와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

- 양형위원회의 업무와 양형기준에 관한 인식 정도
-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죄유형에 관한 의견
 - 범죄유형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방안

라. 조사방법

(1) 일반인

- 1:1 대면조사방법을 사용함

(2) 형사사법기관 실무자 및 형사법 교수 등

- 전자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2. 추진경과

- 양형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 설계를 한국형 사정책연구원(김한균 전문위원)에 용역 의뢰
 - 연구기간 : 2007. 11. 1. ~ 12. 7.
 - 연구계획 : 별지 연구계획서와 같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설문문항 초안에 기초하되, 모의사례 등을 추가하여 운영지원단에서 수정안 작성
- 당초 11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구용역 결과가 늦게 제출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실시가 지체되었음

3. 설문문항의 구성

가. 기본원칙

- 설문조사의 목적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설문이 상당수 차지하도록 설계
- 가급적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문항을 설계

나. 설문의 구성

항목	내용	문항수	비율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일반적으로 법원의 선고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	2	5.4
범죄위험 정도	○ 범죄의 위협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2	5.4

항목	내용	문항수	비율
	○ 위협을 느끼는 범죄유형은 무엇인지		
형벌의 목적	○ 응보, 예방(특별예방, 일반예방), 재사회화, 피해자보호, 공공의 안전 등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의견을 조사	1	2.7
범죄자에 대한 태도	○ 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징역형(실형)이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4	10.8
범죄의 중대성	○ 범죄유형별로 구체적인 모의사례를 제시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	12	32.4
형벌의 경중	○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사이의 경중에 대한 인식을 파악	2	5.4
적정한 양형	○ 구체적인 모의사례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벌을 파악	9	24.4
양형요소	○ 형량을 정할 때 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2	5.4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죄유형	1	2.7
양형위원회 업무	○ 양형기준 및 양형위원회의 목적과 제언	2	5.4
합 계		37	100

다. 설문문항

(1)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

- 범죄와 형벌에 대한 관심 정도
- 일반적으로 법원의 선고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문 1] 다음 질문은 귀하께서 평소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1-1]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언론을 통하거나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형벌에 관한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형벌에 관한 소식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접하셨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을 갖고 접하였다. ② 관심을 갖고 접한 편이다.
 ③ 별로 관심이 없었다. ④ 전혀 관심 있게 접하지 않았다.
 ⑤ 형벌에 관한 소식을 접한 기억이 없다.

[문 1-2]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선고하는 형벌이 일반적으로 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엄하다. ② 엄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대한 편이다.
 ⑤ 매우 관대하다. ⑥ 잘 모르겠다.

(2) 범죄위협 정도

- 범죄의 위협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 구체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범죄유형이 무엇인지

[문 2] 귀하께서는 평소에 귀하나 귀하의 가족(함께 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하여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걱정스럽다. ② 걱정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 [문 4] 로 이동

[문 3]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범죄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범죄는 다음 사항 중 어느 것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살인 ②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포함) ③ 강도, 공갈
 ④ 폭력범죄 ⑤ 교통범죄 ⑥ 절도
 ⑦ 사기 ⑧ 횡령, 배임 ⑨ 명예훼손, 도청 등 명예 관련 범죄
 ⑩ 기타 (_____)

(3) 형벌의 목적

- 응보, 예방(특별예방, 일반예방), 재사회화, 피해자보호 등 형벌의 목적에 관한 의견을 조사

[문 4] 다음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범죄자를 처벌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②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것
 ③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를 가두거나 범죄자에게 경고(위협)를 하는 것
 ④ 다른 사람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규범의식을 높이는 것
 ⑤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거나 사과를 받는 것
 ⑥ 기타 (_____)

(4) 범죄자에 대한 태도와 형벌의 효과

-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원인
- 범죄자의 재사회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
- 징역형(실형)이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문 5] 다음은 전과자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문 5-1] 형벌이 엄할수록 전과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 ③ 반반이다.
-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5-2]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살인 등 아주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 ③ 반반이다.
-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5-3] 상습적인 전과자들도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 ③ 반반이다.
-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5-4]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범죄수법을 배워 교도소를 나온 후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 ③ 반반이다.
-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범죄의 중대성

- 범죄유형별로 모의사례를 제시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

<p>[문 6] 다음은 여러 범죄를 매우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 범죄를 얼마나 중한 범죄로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p> <p><u>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친 경우</u>를 1점으로 보았을 때, 다음 범죄들이 이 범죄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음 범죄가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 보다 5배 정도 나쁘다(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5점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점수의 상한은 100점입니다.</p>	
<p>【예】 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p>	(1)점
범죄의 내용	점수
<p>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1점으로 본다면,</p>	
6-1. 피해자와 싸우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려 1개월 동안 치료해야 할 상해를 입혔다.	()점
6-2. 강도가 밤에 술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한적한 골목으로 끌고 가 겁을 주어 1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빼앗았지만,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점
6-3.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公款 2,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를 감지 않았다.	()점
6-4. 밤에 열려진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시가 50만 원 짜리 중고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 훔친 물건은 부서졌고 피해를 감지 않았다.	()점
6-5. 70세인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아버지가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점
6-6.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꼬여 집으로 놀러오게 한 후 여자아이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점
6-7.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점

6-8. 공무원이 공장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뇌물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	()점
6-9. 밤에 빈 집인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혼자 자고 있는 여주인을 강간하였고, 훔친 물건이나 다른 상처는 없었다.	()점
6-10. 1억 원을 빌린 피해자가 빚 독촉을 삼하게 하자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점
6-1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에 유권자들에게 식사(1인 당 1, 2만 원 정도, 총 100만 원)를 대접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점
6-12. 밤 11시경 소주 5잔을 먹은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고,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점

(6) 형벌의 경중

- 징역형 실행과 집행유예, 벌금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경중에 대한 인식

[문 7]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일반적으로 먼저 벌금형, 징역형, 무기징역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징역 1년, 벌금 500백 만 원 하는 식으로 형벌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징역형은 그 집행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실행을 선고받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다음 형벌 중 어느 것이 더 무겁다(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7-1]

징역 1년의 실행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	-------------------------------------

① 징역 1년의 실행이 더 무겁다.

②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이 더 무겁다.

- ③ 똑같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7-2]

벌금 3,000만 원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	--------------------------------------

- ① 벌금 3,000만 원이 더 무겁다.
- ②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이 더 무겁다.
- ③ 똑같다.
- ④ 잘 모르겠다.

(7) 적정한 양형

- 구체적인 모의사례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형벌을 파악

[문 8] 다음은 3개의 범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 범죄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 8-1]

술에 취한 피고인은 새벽에 집으로 가던 피해자(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문 8-1-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6월 ~ 2년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_____) |

[문 8-1-2] [8-1] 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 전에 강간죄를 범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처벌받지 않은 전과가 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 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징역 6년 이상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_____) | |

[문 8-1-3] [8-1] 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6월 ~ 2년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_____) |

[문 8-2]

피고인은 구청에서 건축 관련 허가,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 공사업자에게 별다른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정도 공무원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문 8-2-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1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_____) | |

[문 8-2-2] [8-2] 의 경우 피고인은 뇌물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공사업자를 위해 각

중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이 위법한 것이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1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⑦ 징역 4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_____) |

[문 8-2-3] [8-2] 의 경우 피고인은 공사업자에게 받은 돈 일부는 상사에게 선물을 사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부하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결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1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_____) | |

[문 8-3]

대기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영자인 피고인은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약 8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자본금이 실제보다 약 1,000억 원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0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지만, 금융기관의 차용금은 모두 갚지 않았습니다.

[문 8-3-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2년 6월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3년 또는 4년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_____) |

[문 8-3-2] [8-3] 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금 중 약 50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2년 6월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3년 또는 4년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징역 6년 이상 |

⑦ 기타 (_____)

[문 8-3-3] [8-3] 의 경우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금 중 약 500억 원을 갚았고, 나머지 대출금에도 부동산 등이 담보로 잡혀 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③ 징역 2년 6월

④ 징역 3년 또는 4년

⑤ 징역 5년 이상

⑥ 기타 (_____)

- 위 사례는 모두 실제 사례를 단순화 한 것임
- 8-1 사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8-2 사례는 징역 6월을 선고
- 8-3 사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8) 양형요소에 대한 인식

- 형량을 정할 때 주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문 9] 다음 사항은 형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것입니다.

[문 9-1] 다음 사항 중 형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범죄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② 범죄피해 등 범행 결과가 얼마나 중한지 여부
- ③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 ④ 범죄자의 전과 횡수와 과거 생활태도

- ⑤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의 의견
- ⑥ 범죄자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의 수와 생활형편
- ⑦ 범죄자의 반성 정도

[문 9-2] 다음 사항 중 형벌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범죄자의 성별
- ② 범죄자의 학력
- ③ 범죄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형편
- ④ 범죄자의 출신 지역
- ⑤ 범죄자의 국적
- ⑥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와 향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 ⑦ 범죄자에 대한 여론

(9)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 범죄유형

[문 10] 양형기준이 공개되면 대략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형벌을 예측가능하게 되고, 형벌을 선고하는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범죄 중 어떤 것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살인범죄 | <input type="checkbox"/> ②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③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 <input type="checkbox"/> ④ 절도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 <input type="checkbox"/> ⑥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⑦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기업인 범죄 | <input type="checkbox"/> ⑧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⑨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 <input type="checkbox"/> ⑩ 명예훼손, 도청 등 명예 관련 범죄 |

- | | |
|---|--|
| <input type="checkbox"/> ⑪ 위증범죄 | <input type="checkbox"/> ⑫ 무고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⑬ 선거범죄 | <input type="checkbox"/> ⑭ 마약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⑮ 수질오염 등 환경범죄 | |
| <input type="checkbox"/> ⑯ 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보건 관련 범죄 | |
| <input type="checkbox"/> ⑰ 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input type="checkbox"/> ⑱ 조세사범 등 조세범죄 |

(10) 범죄피해경험 및 사법기관 접촉 경험 (일반인 조사용)

[문 11] 다음 사항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겪은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1-1]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 11-2] 로 이동
 ② 없다. ➡ [문 12-1] 로 이동

[문 11-2] 가장 최근에 입은 피해는 어떤 것입니까?

- ① 폭력범죄 ② 교통사고
 ③ 절도 ④ 사기
 ⑤ 성폭력(성추행 포함) ⑥ 강도
 ⑦ 기타 (_____)

[문 12] 다음 사항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겪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와의 접촉 경험(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거나 구금자를 면회한 경우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2-1]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접촉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 ① 있다. ➡ [문 12-2] 로 이동
 ② 없다. ➡ [문 13-1] 로 이동

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문 13-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학력 ③ 중학교 학력
 ④ 고등학교 학력 ⑤ 대학교 학력 ⑥ 대학원 이상

[문 13-2]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고급기술직 ② 행정직·관리직 ③ 일반 사무직
 ④ 개인사업·자영업 ⑤ 생산직·기능직 피고용인 ⑥ 판매·서비스업 피고용인
 ⑦ 학생 ⑧ 주부 ⑨ 무직
 ⑩ 기타 (_____)

[문 13-3] 귀하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300만 원 ③ 300~400만 원
 ④ 400~500만 원 ⑤ 500~1,000만 원 ⑥ 1,000만 원 이상
 ⑦ 모름/무응답

(나) 전문가 조사용

[문 11] 다음 사항은 통계 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문 1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 11-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_____ 세

[문 11-3]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 ① 판사 ② 검사 ③ 변호사
 ④ 국선전담변호사 ⑤ 법학교수(전임강사 이상) ⑥ 경찰
 ⑦ 법무사 ⑧ 교도관 ⑨ 언론인

[문 11-4] 귀하는 대략 몇 년 동안 현재의 직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만_____년

4. 설문문항 정리

- 별지와 같음

연구계획서

□ 연구과제명 : 양형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설계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형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인식파악
- 형벌의 종류와 정도결정에서의 고려할 요소에 관한 의견파악
- 양형의 적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인식파악
- 양형기준설정이 필요한 범죄유형에 대한 의견파악
- 현행 양형실무의 장단점에 대한 전문가의견파악
- 우리실정에 바람직한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전문가의견파악

□ 주요 설문내용구성안

- 전국 무작위추출 18세~70세 성인남녀 1000명에 대한 면접 / 전문가 (법관, 검사, 변호사, 경찰, 형법교수, 사법연수생, 법조출입기자) 일정 수 대상 이메일조사/ 각 20분소요 기준
- 일반인·전문가 공통설문 및 전문가 대상 설문으로 구성

문항	설문주제	설문내용
1	범죄율	- 최근범죄율의 증감추세 - 전체범죄중 재범자에 의한 범죄비율 - 재범의 원인
2	범죄위협	- 우리사회에서 범죄문제의 심각성정도 - 일상생활에서 범죄위협인식 - 대중매체로부터의 영향
3	형벌의 목적	- 응보, 예방, 재사회화, 피해자보호, 공공안전 목적의 이해정도 - 형벌목적의 우선순위
4	범죄의 중합	- 범죄유형별 범죄의 심각성정도 - 범죄유형간 경중의 정도
5	형벌의 종류와 효과	- 범죄유형별 적절한 형벌의 종류 - 재사회화 가능성 - 구금형의 재범방지, 재사회화효과 - 비구금형의 재범방지, 재사회화효과
6	형사사법기관	- 형사사법기관별 공정성과 신뢰도 - 형사사법기관별 범죄처벌 성과
7	양형일반의 적정성	- 양형의 공정성 - 선고형일반의 적정성 - 유죄판결과 집행유예비율
8	양형과 교정시설	- 양형에서 교정시설 적정수용인원고려
9	살인	- 모의사례에 대한 적정한 형의 종류와 정도
10	강간	- 모의사례에 대한 적정한 형의 종류와 정도
11	상해	- 모의사례에 대한 적정한 형의 종류와 정도

문항	설문주제	설문내용
12	강도	- 모의사례에 대한 걱정된 형의 종류와 정도
13	절도	- 모의사례에 대한 걱정된 형의 종류와 정도
14	뇌물	- 모의사례에 대한 걱정된 형의 종류와 정도
15	가중적 양형요소	- 범행 행태 - 범죄전력 - 재범가능성
16	감경적 양형요소	- 범행 행태 - 재범가능성 - 피해자 관계
17	양형체계일반	- 양형실무의 문제점
18	양형기준	- 양형기준의 필요성 - 양형기준의 효과 - 집행유예, 구속, 구약식 등의 기준
19	양형기준설정이 필요한 범죄유형	-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의 필요성
20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의 역할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제정업무
*	응답자인적사항	- 기본인적사항 - 형사사법기관접촉경험 - 범죄피해경험

ID				
----	--	--	--	--

양형제도 및 정책에 관한 일반인 인식 조사 【대면면접용】

<p>안녕하십니까?</p> <p>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입니다.</p> <p>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뢰로 우리나라의 양형제도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p> <p>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공개하게 됩니다.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p> <p>귀하의 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p> <p>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김덕영</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 조사팀장 ○○○ ☎ 02-3415-5100</p>
<p>(주) 코리아리서치센터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뢰로 본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판사 이용구 ☎ 02-3480-1924</p>

아래 사항은 조사기관에서 기입하는 내용으로 응답자분께서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1-1. 혼인 관계	① 기혼 ② 미혼	응답자 성명	
SQ2. 응답자 연령	만 _____ 세	SQ2-1		① 18세 미만 ☞ 설문 중단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4. 응답자 주소	구/시/군	읍/면/동	전화번호)	-
SQ5. 거주지 규모	①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				

☞ 우선 최근 우리나라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 1] 다음 질문은 귀하께서 평소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1-1]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언론을 통하거나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형벌에 관한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형벌에 관한 소식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접하셨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을 갖고 접하였다. ② 관심을 갖고 접한 편이다.
 ③ 별로 관심이 없었다. ④ 전혀 관심 있게 접하지 않았다.
 ⑤ 형벌에 관한 소식을 접한 기억이 없다.

[문 1-2]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선고하는 형벌이 일반적으로 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엄하다. ② 엄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대한 편이다.
 ⑤ 매우 관대하다. ⑥ 잘 모르겠다.

[문 2] 귀하께서는 평소에 귀하나 귀하의 가족(함께 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하여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걱정스럽다. ② 걱정스러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 [문 4] 로 이동

[문 3]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범죄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범죄는 다음 사항 중 어느 것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살인 ②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포함) ③ 강도, 공갈

- ④ 폭력범죄 ⑤ 교통범죄 ⑥ 절도
 ⑦ 사기 ⑧ 횡령, 배임 ⑨ 명예훼손, 도청 등 명예 관련 범죄
 ⑩ 기타 (_____)

☞ 다음으로 형벌의 목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4] 다음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범죄자를 처벌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②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것
 ③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자를 가두거나 범죄자에게 경고(위협)를 하는 것
 ④ 다른 사람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규범의식을 높이는 것
 ⑤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거나 사과를 받는 것
 ⑥ 기타 (_____)

☞ 다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5] 다음은 전과자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문 5-1] 형벌이 엄할수록 전과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5-2]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살인 등 아주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5-3] 상습적인 전과자들도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5-4]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범죄수법을 배워 교도소를 나온 후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다음은 범죄의 중대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6] 다음은 여러 범죄를 매우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 범죄를 얼마나 중한 범죄로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1점으로 보았을 때, 다음 범죄들이 이 범죄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음 범죄가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보다 5배 정도 나쁘다(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5점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점수의 상한은 100점입니다.

【예】 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1)점
범죄의 내용	점수
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1점으로 본다면,	
6-1. 피해자와 싸우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려 1개월 동안 치료해야 할 상해를 입혔다.	()점
6-2. 강도가 밤에 술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한적한 골목으로 끌고 가 겁을 주어 1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빼앗았지만,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점
6-3.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 공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를 갚지 않았다.	()점
6-4. 밤에 열린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시가 50만 원 짜리 중고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 훔친 물건은 부서졌고 피해를 갚지 않았다.	()점
6-5. 70세인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아버지가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점
6-6.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꼬여 집으로 놀러오게 한 후 여자아이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점
6-7.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점
6-8. 공무원이 공장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뇌물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	()점
6-9. 밤에 빈 집인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혼자 자고 있는 여주인을 강간하였고, 훔친 물건이나 다른 상처는 없었다.	()점
6-10. 1억 원을 빌린 피해자가 빚 독촉을 삼하게 하자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점
6-1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에 유권자들에게 식사(1인 당 1, 2만 원 정도, 총 100만 원)를 대접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점
6-12. 밤 11시경 소주 5잔을 먹은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고,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점

☞ 다음은 형벌의 경중과 사례별 형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7] 범죄자를 처벌할 때는 일반적으로 먼저 벌금형, 징역형, 무기징역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징역 1년, 벌금 500백 만 원 하는 식으로 형벌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징역형은 그 집행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다음 형벌 중 어느 것이 더 무겁다(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7-1]

징역 1년의 실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	-------------------------------------

- ① 징역 1년의 실형이 더 무겁다.
- ②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이 더 무겁다.
- ③ 똑같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7-2]

벌금 3,000만 원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	--------------------------------------

- ① 벌금 3,000만 원이 더 무겁다.
- ②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이 더 무겁다.
- ③ 똑같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8] 다음은 3개의 범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 범죄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 8-1]

술에 취한 피고인은 새벽에 집으로 가던 피해자(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문 8-1-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6월 ~ 2년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_____) |

[문 8-1-2] [8-1]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 전에 강간죄를 범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처벌받지 않은 전과가 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징역 6년 이상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_____) | |

[문 8-1-3] [8-1]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징역 1년 6월 ~ 2년의 집행유예 | <input type="checkbox"/>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 <input type="checkbox"/>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input type="checkbox"/>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
| <input type="checkbox"/> ⑤ 징역 5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_____) |

[문 8-2]

피고인은 구청에서 건축 관련 허가,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 공사업자에게 별다른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정도 공무원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문 8-2-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④ 징역 1년 이하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⑦ 기타 (_____)

[문 8-2-2] [8-2] 의 경우 피고인은 뇌물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공사업자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이 위법한 것이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④ 징역 1년 이하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⑦ 징역 4년 이상 ⑧ 기타 (_____)

[문 8-2-3] [8-2] 의 경우 피고인은 공사업자에게 받은 돈 일부는 상사에게 선물을 사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부하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결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④ 징역 1년 이하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⑦ 기타 (_____)

[문 8-3]

대기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영자인 피고인은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약 8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자본금이 실제보다 약 1,000억 원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0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지만, 금융기관의 차용금은 모두 갚지 않았습니다.

[문 8-3-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③ 징역 2년 6월 ④ 징역 3년 또는 4년
 ⑤ 징역 5년 이상 ⑥ 기타 (_____)

[문 8-3-2] [8-3] 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금 중 약 50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③ 징역 2년 6월 ④ 징역 3년 또는 4년
 ⑤ 징역 5년 이상 ⑥ 징역 6년 이상
 ⑦ 기타 (_____)

[문 8-3-3] [8-3] 의 경우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금 중 약 500억 원을 갚았고, 나머지 대출금에도 부동산 등이 담보로 잡혀 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③ 징역 2년 6월 ④ 징역 3년 또는 4년
 ⑤ 징역 5년 이상 ⑥ 기타 (_____)

☞ 다음은 형벌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9] 다음 사항은 형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것입니다.

[문 9-1] 다음 사항 중 형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범죄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② 범죄피해 등 범행 결과가 얼마나 중한지 여부
- ③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 ④ 범죄자의 전과 횡수와 과거 생활태도
- ⑤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의 의견
- ⑥ 범죄자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의 수와 생활형편
- ⑦ 범죄자의 반성 정도

[문 9-2] 다음 사항 중 형벌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범죄자의 성별
- ② 범죄자의 학력
- ③ 범죄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형편
- ④ 범죄자의 출신 지역
- ⑤ 범죄자의 국적
- ⑥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와 향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 ⑦ 범죄자에 대한 여론

☞ 다음은 양형기준을 정할 대상범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10] 양형기준이 공개되면 대략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형벌을 예측가능하게 되고, 형벌을 선고하는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범죄 중 어떤 것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살인범죄 | <input type="checkbox"/> ②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③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 <input type="checkbox"/> ④ 절도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 <input type="checkbox"/> ⑥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⑦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기업인 범죄 | <input type="checkbox"/> ⑧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⑨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 <input type="checkbox"/> ⑩ 명예훼손, 도청 등 명예 관련 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⑪ 위증범죄 | <input type="checkbox"/> ⑫ 무고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⑬ 선거범죄 | <input type="checkbox"/> ⑭ 마약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⑮ 수질오염 등 환경범죄 | |
| <input type="checkbox"/> ⑯ 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보건 관련 범죄 | |
| <input type="checkbox"/> ⑰ 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input type="checkbox"/> ⑱ 조세사범 등 조세범죄 |

☞ 다음은 범죄피해 및 형사사법기관 접촉경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11] 다음 사항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겪은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1-1]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 11-2] 로 이동
- ② 없다. ☞ [문 12-1] 로 이동

[문 11-2] 가장 최근에 입은 피해는 어떤 것입니까?

- ① 폭력범죄
- ② 교통사고
- ③ 절도
- ④ 사기
- ⑤ 성폭력(성추행 포함)
- ⑥ 강도
- ⑦ 기타 (_____)

[문 12] 다음 사항은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겪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와의 접촉 경험(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거나 구금자를 면회한 경우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2-1]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와 접촉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 12-2] 로 이동
- ② 없다. ➡ [문 13-1] 로 이동

[문 12-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 이상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 ① 고소인의 경험
- ② 피해자의 경험
- ③ 증인(목격자 등 참고인 포함)의 경험
- ④ 각종 민원 신청
- ⑤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구금된 자 면회 등
- ⑥ 기타 (_____)

☞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개인적인 내용에 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 13] 다음 사항은 통계 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만약 질문이 불쾌하시다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문 13-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학력 ③ 중학교 학력
 ④ 고등학교 학력 ⑤ 대학교 학력 ⑥ 대학원 이상

[문 13-2]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직·고급기술직 ② 행정직·관리직 ③ 일반 사무직
 ④ 개인사업·자영업 ⑤ 생산직·기능직 피고용인 ⑥ 판매·서비스업 피고용인
 ⑦ 학생 ⑧ 주부 ⑨ 무직
 ⑩ 기타 (_____)

[문 13-3] 귀하 가정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200만 원 미만 ② 200~300만 원 ③ 300~400만 원
 ④ 400~500만 원 ⑤ 500~1,000만 원 ⑥ 1,000만 원 이상
 ⑦ 모름/무응답

끝까지 설문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ID				
----	--	--	--	--

양형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우편조사용】

<p>안녕하십니까?</p> <p>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입니다.</p> <p>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뢰로 우리나라의 양형제도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p> <p>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적 관심, 범죄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2009년 4월경까지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참조).</p> <p>귀하의 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p> <p>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코리아리서치센터 대표이사 김덕영</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 조사팀장 ○○○ ☎ 02-3415-5100</p>
<p>(주) 코리아리서치센터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뢰로 본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12월</p> <p style="text-align: center;">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판사 이용구 ☎ 02-3480-1924</p>

<p>아래 사항은 조사기관에서 기입하는 내용이므로 응답자분께서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SQ3. 거주지	<p>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p>		
SQ4. 응답자 주소	구/시/군	읍/면/동	전화번호) -
SQ5. 거주지 규모	<p>①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p>		

☞ 우선 최근 우리나라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문 1] 다음 질문은 귀하께서 평소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1-1] 귀하께서는 최근 1개월 동안 언론을 통하거나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형벌에 관한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최근 형벌에 관한 소식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접하셨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을 갖고 접하였다. ② 관심을 갖고 접한 편이다.
 ③ 별로 관심이 없었다. ④ 전혀 관심 있게 접하지 않았다.
 ⑤ 형벌에 관한 소식을 접한 기억이 없다.

[문 1-2]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선고하는 형벌이 일반적으로 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엄하다. ② 엄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대한 편이다.
 ⑤ 매우 관대하다. ⑥ 잘 모르겠다.

[문 1-3]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선고하는 형벌이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일관되어 있다. ② 일관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편차가 있는 편이다.
 ⑤ 매우 편차가 많다. ⑥ 잘 모르겠다.

☞ 다음으로 형벌의 목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2] 다음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문 3-4]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범죄수법을 배워 교도소를 나온 후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약간 동의하는 편이다.
 ③ 반반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다음은 범죄의 중대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4] 다음은 여러 범죄를 매우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 범죄를 얼마나 중한 범죄로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1점으로 보았을 때, 다음 범죄들이 이 범죄보다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음 범죄가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보다 5배 정도 나쁘다(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5점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점수의 상한은 100점입니다.

【예】 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1)점
범죄의 내용	점수
동네 슈퍼마켓에서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친 경우를 1점으로 본다면,	
4-1. 피해자와 싸우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려 1개월 동안 치료해야 할 상해를 입혔다.	()점
4-2. 강도가 밤에 술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한적한 골목으로 끌고 가 겁을 주어 1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빼앗았지만,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점
4-3.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公款 2,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를 감지 않았다.	()점
4-4. 밤에 열려진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시가 50만 원 짜리 중고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 훔친 물건은 부서졌고 피해를 감지 않았다.	()점
4-5. 70세인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아버지가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점
4-6.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꼬여 집으로 놀러오게 한 후 여자아이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점
4-7.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점
4-8. 공무원이 공장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뇌물로 현금 500만 원을 받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	()점
4-9. 밤에 빈 집인 줄 알고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혼자 자고 있는 여주인을 강간하였고, 훔친 물건이나 다른 상처는 없었다.	()점
4-10. 1억 원을 빌린 피해자가 빚 독촉을 삼하게 하자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점
4-11.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에 유권자들에게 식사(1인 당 1, 2만 원 정도, 총 100만 원)를 대접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점
4-12. 밤 11시경 소주 5잔을 먹은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고,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점

☞ 다음은 형벌의 경중과 사례별 형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5] 귀하는 다음 형벌 중 어느 것이 더 무겁다(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1]

징역 1년의 실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	-------------------------------------

- ① 징역 1년의 실형이 더 무겁다.
- ②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이 더 무겁다.
- ③ 똑같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5-2]

벌금 3,000만 원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	--------------------------------------

- ① 벌금 3,000만 원이 더 무겁다.
- ②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이 더 무겁다.
- ③ 똑같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6] 다음은 3개의 범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귀하가 다음 범죄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 6-1]

술에 취한 피고인은 새벽에 집으로 가던 피해자(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습니다.

[문 6-1-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6월 ~ 2년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⑤ 징역 5년 이상 ⑥ 기타 (_____)

[문 6-1-2] [6-1]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 전에 강간죄를 범하였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처벌받지 않은 전과가 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⑤ 징역 5년 이상 ⑥ 징역 6년 이상
 ⑦ 기타 (_____)

[문 6-1-3] [6-1]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6월 ~ 2년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③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④ 징역 2년 6월 ~ 4년 이하
 ⑤ 징역 5년 이상 ⑥ 기타 (_____)

[문 6-2]

피고인은 구청에서 건축 관련 허가,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공사업자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 공사업자에게 별다른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20년 정도 공무원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문 6-2-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④ 징역 1년 이하
-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 ⑦ 기타 (_____)

[문 6-2-2] [6-2] 의 경우 피고인은 뇌물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공사업자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그것이 위법한 것이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④ 징역 1년 이하
-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 ⑦ 징역 4년 이상
- ⑧ 기타 (_____)

[문 6-2-3] [6-2] 의 경우 피고인은 공사업자에게 받은 돈 일부는 상사에게 선물을 사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부하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결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1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②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③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 ④ 징역 1년 이하
- ⑤ 징역 1년 6월 ~ 2년 이하
- ⑥ 징역 2년 6월 ~ 3년 이하
- ⑦ 기타 (_____)

[문 6-3]

대기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경영자인 피고인은 회사에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약 8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자본금이 실제보다 약 1,000억 원이 더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0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지만, 금융기관의 차용금은 모두 갚지 않았습니다.

[문 6-3-1] 이 경우 귀하는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③ 징역 2년 6월 ④ 징역 3년 또는 4년
 ⑤ 징역 5년 이상 ⑥ 기타 (_____)

[문 6-3-2] [6-3] 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금 중 약 50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③ 징역 2년 6월 ④ 징역 3년 또는 4년
 ⑤ 징역 5년 이상 ⑥ 징역 6년 이상
 ⑦ 기타 (_____)

[문 6-3-3] [6-3] 의 경우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금 중 약 500억 원을 갚았고, 나머지 대출금에도 부동산 등이 담보로 잡혀 있다면, 귀하는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겠습니까?

- ①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② 징역 3년의 집행유예
 ③ 징역 2년 6월 ④ 징역 3년 또는 4년
 ⑤ 징역 5년 이상 ⑥ 기타 (_____)

☞ 다음은 형벌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7] 다음 사항은 형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 것입니다.

[7-1] 다음 사항 중 형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범죄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② 범죄피해 등 범행 결과가 얼마나 중한지 여부
- ③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 ④ 범죄자의 전과 횡수와 과거 생활태도
- ⑤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의 의견
- ⑥ 범죄자가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의 수와 생활형편
- ⑦ 범죄자의 반성 정도

[7-2] 다음 사항 중 형벌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범죄자의 성별
- ② 범죄자의 학력
- ③ 범죄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형편
- ④ 범죄자의 출신 지역
- ⑤ 범죄자의 국적
- ⑥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와 향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 ⑦ 범죄자에 대한 여론

☞ 다음은 양형기준을 정할 대상범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8] 귀하께서는 다음 범죄 중 어떤 것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살인범죄 | <input type="checkbox"/> ②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③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 <input type="checkbox"/> ④ 절도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 <input type="checkbox"/> ⑥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⑦ 업무상 횡령, 배임 등 기업인 범죄 | <input type="checkbox"/> ⑧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 |
| <input type="checkbox"/> ⑨ 뺑소니,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 <input type="checkbox"/> ⑩ 명예훼손, 도청 등 명예 관련 범죄 |

- ⑪ 위증범죄
- ⑫ 무고범죄
- ⑬ 선거범죄
- ⑭ 마약범죄
- ⑮ 수질오염 등 환경범죄
- ⑯ 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보건 관련 범죄
- ⑰ 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⑱ 조세사범 등 조세범죄

☞ 다음은 범죄피해 및 형사사법기관 접촉경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9]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양형기준 또는 양형위원회의 목적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순서를 정해서 답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양형편차의 해소
- ② 적절한 양형의 확보
- ③ 양형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확보
- ④ 형벌체계의 재정비
- ⑤ 양형심리의 충실화
- ⑥ 기타 (_____)

[문 10] 양형위원회에 대하여 조언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개인적인 내용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문 11] 다음 사항은 통계 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문 11-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문 11-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_____ 세

[문 11-3] 귀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판사 | <input type="checkbox"/> ② 검사 | <input type="checkbox"/> ③ 변호사 |
| <input type="checkbox"/> ④ 국선전담변호사 | <input type="checkbox"/> ⑤ 법학교수(전임강사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경찰 |
| <input type="checkbox"/> ⑦ 법무사 | <input type="checkbox"/> ⑧ 교도관 | <input type="checkbox"/> ⑨ 언론인 |

[문 11-4] 귀하는 대략 몇 년 동안 현재의 직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만 _____ 년

끝까지 설문에 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추가 양형조사표